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중심으로

일 시 2025. 9. 8. (월) 14:00 ~ 16:0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조인철 · 최형두  초록우산  푸른나무재단  
The Blue Tree Foundation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중심으로

일 시 2025. 9. 8. (월) 14:00 ~ 16:0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조인철 · 최형두



푸른나무재단  
The Blue Tree Foundation

# CONTENTS

## 개 회사

1 조인철 국회의원	02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2 최형두 국회의원	04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3 황영기 회장	06 초록우산
4 박길성 이사장	08 푸른나무재단

## 주 제 발표

1 디지털 환경 속 사이버폭력 피해현황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개선과제	14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2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유해콘텐츠 유통방지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개선사항	30 강영은 초록우산 사내변호사

## 종 합 토 론

좌장	박종효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교수
토론	김은혜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팀장 ..... 44
	안나현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 ..... 48
	양기정 경기 승지초등학교 교사 ..... 54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58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 ..... 66
	노현서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과장 ..... 70

# 개 회사

- 1 조인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 2 최형두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3 황영기 회장 (초록우산)
- 4 박길성 이사장 (푸른나무재단)

## 개회사



조인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인철(광주 서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기성세대가 어린 시절 즐기던 놀이터의 미끄럼틀과 그네가, 오늘날 아동·청소년에게는 디지털 공간 속 영상과 미디어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단순히 놀이뿐 아니라 교육과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디지털 환경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온전히 디지털 시대로 전환된 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왜곡·허위정보의 확산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불법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디지털 불법콘텐츠 문제에 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시의적절한 자리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준비해주신 최형두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초록우산, 푸른나무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불법·허위정보의 주요 유통 경로인 유튜브·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해외플랫폼 책임강화 패키지법’,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정보를 퍼트리는 이른바 사이버렉카의 부당 이익을 차단하는 ‘사이버렉카 방지법’,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인공지능 제작 영상물의 표시 의무화를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지키는 확실하고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급변하는 플랫폼 환경에 맞춰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될 지혜와 제안들이 실질적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져 미래세대가 더욱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오늘 논의된 성과를 적극 검토하여 국회에서 입법으로 연결으로 하는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개회사



최형두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본산, AI 디지털 자유무역 도시 마산합포 국회의원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입니다.

오늘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 준비에 함께해 주신 조인철 의원님, 그리고 초록우산, 푸른나무재단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아동 청소년들은 디지털 기기의 일상화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 괴롭힘, 불법 도박, 음란물 유해 콘텐츠는 우리 아이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검거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의자 중 10대 청소년이 전체의 8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적 장치와 대응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여 청소년들의 보호와 신속한 대응, 책임 있는 예방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디지털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의 차단과 피해 회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서둘러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그들이 자라는 환경적 요인부터 살펴야 합니다. 과거에는 야외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사회성을 키웠던 반면, 인터넷의 대중화 이후 청소년들은 독립된 공간에서 부모의 관심 밖에 놓인 채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보호자가 현실과 가상 세계 모두에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SNS 기업들이 청소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하고, 위험성 고지와 안전성 업데이트를 의무화하며, 유해 콘텐츠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해외의 다양한 규제 사례를 참고하되, 동시에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체계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을 책임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서 입법적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개회사



황영기 회장 (초록우산)

안녕하십니까. 초록우산 회장 황영기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위해 힘써주신 조인철 의원님, 최형두 의원님, 푸른나무재단 박길성 이사장님께 감사드리며, 발제를 맡아주신 푸른나무재단 김미정 상담본부장님, 초록우산 강영은 변호사님, 좌장을 맡아주신 건국대학교 박종효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함께해 주실 각 기관과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환경은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과 소통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성착취물·불법촬영물·딥페이크 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과 사이버폭력이라는 위협 또한 존재합니다. 피해는 삭제 지연과 대응 부재 속에서 2차·3차 피해로 이어지며, 장기간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호주는 「온라인 세이프티 법」으로 플랫폼의 사이버폭력물,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48시간 이내 삭제를 의무화했고, 미국 역시 비동의 성적 이미지와 AI생성 성적 이미지를 플랫폼이 48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처벌과 금전적 제재까지 부과하는 고강도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현행법은 “지체 없이” 삭제라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삭제까지 몇 달이 걸리더라도 플랫폼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초록우산은 아동의 삶의 일부가 된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동의 행복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아동참여 활동과 법안연구, 캠페인 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삭제되지 않는 불법콘텐츠의 위험’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경고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이는 이번 토론회의 논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겪는 사이버폭력과 불법콘텐츠 피해 실태를 공유하고, 현행 대응체계의 한계를 점검합니다. 발제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구체적 입법 개선 과제가 제시되며,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현장 상담·보호 전문가, 교육 현장 교사, 국회와 정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신속 대응과 예방 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번 논의가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디지털 공간에서도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회사



박길성 이사장 (푸른나무재단)

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재단의 이사장 박길성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조인철 의원님, 최형두 의원님, 초록우산 항영기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푸른나무재단은 지난 30년간 '청소년의 곁에는 늘 푸른나무가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마음에 품고 청소년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열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오늘날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공간은 학교와 가정을 넘어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되었고 이제 생활의 한 부분을 넘어, 사회적 관계와 성장을 이어가는 중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합성물과 같은 디지털 불법콘텐츠를 통한 사이버폭력은 우리 아이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상처로 남으며,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와 절차는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는 디지털 환경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은 여전히 무겁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율적 규제를 선호하고 있으나, 기업 스스로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장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경험은 무엇보다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는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중심에 둔 보호와 회복 체계를 마련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디지털 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푸른나무재단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아동·청소년이 희망을 꿈꾸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단순한 담론의 장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와 정책 그리고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을 공유하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의 만남이 아동·청소년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제발표

1 디지털 환경 속 사이버폭력 피해현황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개선과제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2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유해콘텐츠 유통방지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개선사항

강영은 초록우산 사내변호사

# 1 주제발표

디지털 환경 속 사이버폭력 피해현황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개선과제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디지털 환경 속 사이버폭력 피해현황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개선과제

2025.09.08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김미정



## 목차

- 1 들어가며
  - 1)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일상화와 위험 노출
  - 2) 주요 피해 발생 플랫폼과 그 구조적 특성
- 2 디지털 환경 속 아동·청소년 폭력 피해 현황 및 특징
  - 1) 실태조사 기반 주요 피해 양상
  - 2) 사이버폭력과 디지털 불법콘텐츠
  - 3) 디지털 매개물 기반 폭력의 특징
- 3 주요 피해 사례 및 개선과제
  - 1) 제재없이 방치되는 사이버폭력
  - 2) 사후 대응 중심 시스템의 한계
  - 3) 대응이 어려운 해외 플랫폼 피해
- 4 맷으며 : 예방부터 회복까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 대응체계

## 1 들어가며

- 1)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일상화와 위험 노출
- 2) 주요 피해 발생 플랫폼과 그 구조적 특성



## 1. 들어가며

### 1)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일상화와 위험 노출

2024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NIA)

출처: 2024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4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NIA)

출처: 2024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푸른나무재단 The Blue Tree Foundation

매체 이용률 (%)	유해 콘텐츠 접촉 경험 (%)
94.2%	70.7%
92.6%	59.3%
91.1%	58.6%
89.7%	47.1%
88.3%	35.6%
83.7%	37.5%

■ 매체 이용률 ■ 유해 콘텐츠 접촉 경험

94.2% 70.7% 37.5% 59.3% 58.6% 47.1% 35.6% 37.5%

92.6% 59.3% 22.5% 8%

91.1% 58.6%

89.7% 47.1%

88.3% 35.6%

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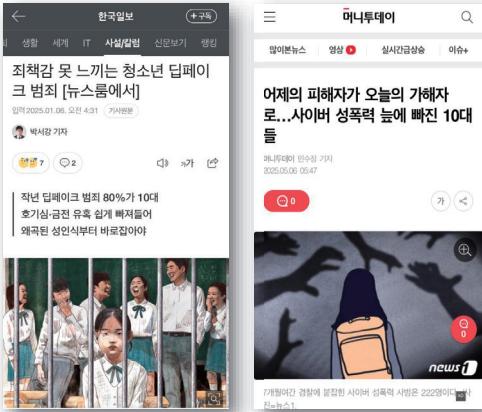
70.7% 59.3% 58.6% 47.1% 35.6%

37.5% 22.5% 8%

94.2% 92.6% 91.1% 89.7% 88.3% 83.7%

## 1. 들어가며

### 1)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일상화와 위험 노출



005

## 1. 들어가며

### 2) 주요 피해 발생 플랫폼과 그 구조적 특성



- 익명성 → 간소한 실명 인증 절차 및 관리 미흡으로 가해자 추적과 신원 확인이 어려움
- 확산성(알고리즘 추천 및 자동 확산 등) → 유해 콘텐츠가 짧은 시간 내 대규모로 확산됨.
- 개방성(플랫폼 간 연결 구조) → 정확한 피해 플랫폼 파악이 어려워 대응이 어려움.
- 폐쇄성(소규모 및 단단한 집단구조, 딥웹, 다크웹 등) → 외부 감시가 어려워 신속한 개입이 어려움.
- 국외 소재 플랫폼 운영 구조 → 해외 서버 기반 플랫폼의 경우 삭제·수사 협조가 지연됨.

출처: 푸른나무재단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



2

## 디지털 환경 속 아동·청소년 폭력 피해 현황 및 특징

- 1) 실태조사 기반 주요 피해 양상
- 2) 사이버폭력과 디지털 불법콘텐츠
- 3) 디지털 매개물 기반 폭력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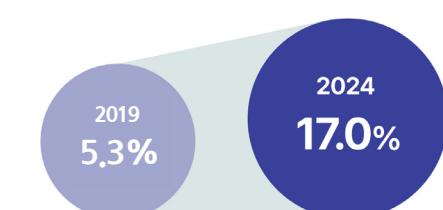


## 2. 디지털 환경 속 아동·청소년 폭력 피해 현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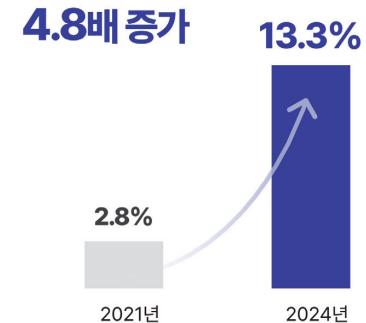
### 1) 실태조사 기반 주요 피해 양상

#### ❖ 사이버폭력의 증가

##### ① 학교폭력 피해 중 사이버폭력 비율



##### ② 사이버폭력 피해 유형 중 사이버성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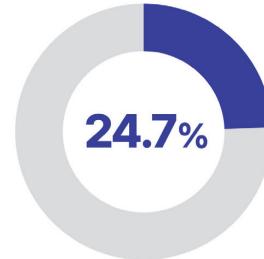
출처: 2025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조사 | 조사기간: 2024.11.18~2024.12.31 / 조사대상: 초·중·고교학생 12,002명  
\*학부모인식조사 | 조사기간: 2025.01.22~2025.02.24 / 조사대상: 초·중·고교녀보호자 520명

## 2. 디지털 환경 속 아동·청소년 폭력 피해 현황 및 특징

### 1) 실태조사 기반 주요 피해 양상

#### ❖ 신종 사이버성폭력, 딥페이크 기술 악용

☞ 사이버성폭력 중 딥페이크 악용



☞ [학부모인식조사]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성폭력 대응 대책 강화' 등의



푸른나무재단  
The Blue Tree Foundation

출처: 2025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푸른나무재단)  
\*학생실태조사 | 조사기간: 2024.11.18~2024.12.31/조사대상: 초·중·고재학생 12,002명  
\*학부모인식조사 | 조사기간: 2025.01.22~2025.02.24/조사대상: 초·중·고자녀보호자 520명

## 2. 디지털 환경 속 아동·청소년 폭력 피해 현황 및 특징

### 1) 실태조사 기반 주요 피해 양상

#### ❖ 플랫폼 규제 없고 가해자 반성도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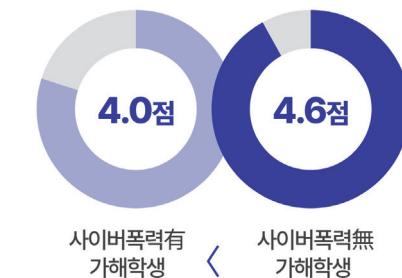
☞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 후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 81.4%

경고 메세지를 받았다 — 9.5%

계정이 삭제되었다 — 4.8%

☞ 사이버폭력 유무에 따른 반성정도



푸른나무재단  
The Blue Tree Foundation

출처: 2025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푸른나무재단)  
\*학생실태조사 | 조사기간: 2024.11.18~2024.12.31/조사대상: 초·중·고재학생 12,002명  
\*학부모인식조사 | 조사기간: 2025.01.22~2025.02.24/조사대상: 초·중·고자녀보호자 520명

## 2. 디지털 환경 속 아동·청소년 폭력 피해 현황 및 특징

### 1) 실태조사 기반 주요 피해 양상

#### ❖ 사이버폭력, 자살·자해 충동에 영향

☞ 사이버폭력 유무에 따른 피해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47.5%



전체  
피해학생  
38.0%

☞ 피해 고통으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 경험

65.6% 사이버성폭력 피해학생



44.8% 성폭력 피해학생



전체 피해학생

푸른나무재단  
The Blue Tree Foundation

출처: 2025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푸른나무재단)  
\*학생실태조사 | 조사기간: 2024.11.18~2024.12.31/조사대상: 초·중·고재학생 12,002명  
\*학부모인식조사 | 조사기간: 2025.01.22~2025.02.24/조사대상: 초·중·고자녀보호자 520명

## 2. 디지털 환경 속 아동·청소년 폭력 피해 현황 및 특징

### 1) 실태조사 기반 주요 피해 양상

#### ❖ 적절한 개입 있어야 반성도 높아져

☞ 가해 후 발생한 상황에 따른 반성정도

☞ 사이버폭력 유무에 따른 가해 후 상황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34.9%

사이버폭력有  
가해학생

"선생님께 혼났다"

24.7%

사이버폭력無  
가해학생

20.9%

사이버폭력有  
가해학생

49.4%

사이버폭력無  
가해학생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음  
4.0점

선생님께 지도받음  
4.7점

부모님께 지도받음  
4.8점

푸른나무재단  
The Blue Tree Foundation

출처: 2025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푸른나무재단)  
\*학생실태조사 | 조사기간: 2024.11.18~2024.12.31/조사대상: 초·중·고재학생 12,002명  
\*학부모인식조사 | 조사기간: 2025.01.22~2025.02.24/조사대상: 초·중·고자녀보호자 520명

## 2. 디지털 환경 속 아동·청소년 폭력 피해 현황 및 특징

### 1) 실태조사 기반 주요 피해 양상

#### ❖ SNS 사용규제와 플랫폼기업의 책무 강화 필요

- ▶ [학부모인식조사] '사이버폭력에 따른 플랫폼 기업의 책무 이행' 등의
  - ▶ [학부모인식조사] '청소년의 SNS 사용 규제 강화'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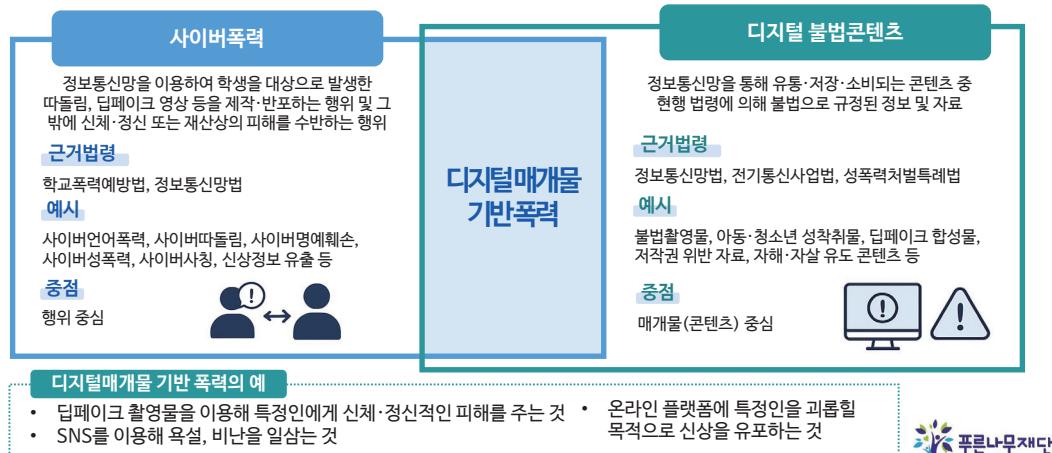


출처: 2025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조사기간: 2024.11.18~2024.12.31 | 조사대상: 초·중·고재학생 12,002명  
\*한부모이신조사 | 조사기간: 2025.01.22~2025.02.24 | 조사대상: 초·중·고자녀보호자 520명



## 2. 디지털 환경 속 아동·청소년 폭력 피해 현황 및 특징

## 2) 사이버폭력과 디지털 불법콘텐츠



## 2. 디지털 환경 속 아동·청소년 폭력 피해 현황 및 특징

### 3) 디지털 매개물 기반 폭력의 특징

피해 증폭과 확장

- 가해 행위(언어·이미지·영상)와 유해 콘텐츠가 결합하여 피해 강도가 높아지는 구조
  - 콘텐츠 자체가 폭력의 증거이자 2차 피해의 매개로 작용
  - 최초 피해 이후 다수 이용자의 확산·재가공으로 피해 범위가 넓어짐
  - 온라인 저널행동들로써 범죄로 명예·사생활·아동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확대됨

### 삭제의 어려움과 반복 피해

- 한 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 삭제가 어려워 장기간 피해 지속
  - 삭제 이후에도 재유포·재가공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반복됨
  - 장기 피해로 인해 심리적 회복이 지연되고, 피해자는 지속적인 불안과 스트레스에 노출됨



## 2. 디지털 환경 속 아동·청소년 폭력 피해 현황 및 특징

## 2) 사이버폭력과 디지털 불법콘텐츠



### 3) 디지털 매개물 기반 폭력의 특징

심리·사회적 파급 효과 확대

- 지속적 노출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 악화
  - 대인관계 회피와 사회적 고립 심화, 학업 의욕 저하 및 성적 하락
  - 사회적 평판 훼손, 가족관계 갈등 등 생활 전반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
  - 온라인 피해가 오프라인으로 벌어 스트오크 시체적 위험 징진적 폭행으로 이어질 위험



### 3 주요 피해 사례 및 개선과제

1) 제재 없이 방치되는 사이버폭력

2) 사후 대응 중심 시스템의 한계

3) 대응이 어려운 해외 플랫폼 피해

### 3. 주요 피해 사례 및 개선과제

#### 1) 제재 없이 방치되는 사이버폭력

A(중2, 남)

“딥페이크건으로 학교폭력신고를 당했어요. 예전에도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대요? 어차피 가짜이고 누가 봐도 학교에 성인들이 게걸스러울 수 있나요?”

B, C(고1, 여, 학부모)

“SNS에 저희 아이의 신체적 특징을 허화화한 영상물이 올라와서 플랫폼에 신고했는데, 성적인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이는 이 사건 이후로 우울증에 고통받아 까지웠는데, 기해 학생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를 절만 다니고 있어요. 왜 우리 아이만 고통받아야 하죠?”

### 3. 주요 피해 사례 및 개선과제

#### 1) 제재 없이 방치되는 사이버폭력

**현행 제도의 한계**

- 사이버폭력 가해 이후에도 ‘플랫폼 내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응답이 81.4%에 달해, 피해자가 무대응 속에 방치되는 현실이 드러남. 아무런 제재가 없는 현실은 가해 행위를 강화하여, 점차 더 큰 피해를 양산해 낼 우려가 있음.
- 현행 제도는 특정 성폭력 범죄 정보에만 조치가 적용돼 다양한 사이버폭력 피해 유형에 즉각 대응이 어렵고, 일부 플랫폼은 신고 후에도 장기간 무대응 상태가 이어짐.
- 대부분의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이용자 보호 정책을 통해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있다고 공시하고 있으나, 실제 사례에서는 삭제가 지연되거나 거부되고 있는 일이 빈번하게 관찰됨.

### 3. 주요 피해 사례 및 개선과제

#### 1) 제재 없이 방치되는 사이버폭력

**개선 과제 | 플랫폼 책임 강화 및 조치 실적 보고제 도입**

**1) 플랫폼 책임 강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삭제·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대상을 디지털 매개물 기반 폭력 전반(성착취물·개인정보 유출·명예훼손성 허위정보 등)으로 확대해야 함.
- 또한, 플랫폼별 조치 지연·미이행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조치 실적 보고제 도입**

- 플랫폼이 피해 콘텐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사회적 감시와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삭제 지연이나 미이행 등 부실한 대응에 대해서는 제재를 포함한 실질적인 이행력 확보 장치를 마련해,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 3. 주요 피해 사례 및 개선과제

#### 2) 사후 대응 중심 시스템의 한계



“같은반애들이제시진을여러가지도양으로편집해서마치이모티콘처럼채팅방에서사용하고있다는걸알게되었어요. 선생님이애들한테시진을모두지우라고말씀하셨지만, 퍼져나가는속도가너무빨라요. 똑같은이미지가똑같은플랫폼에또올라오는건데, 이게왜기술적으로막을수없는건지이해가안가요.”



푸른나무재단  
The Blue Tree Foundation

“A어플에서시·이버폭력이발생해서신고했더니, B어플로옮겨가똑같은일이반복되었어요. 신고의미가있나싶어요. 저를보호해줄수있는건아무것도없다는생각이들어요.”

### 3. 주요 피해 사례 및 개선과제

#### 2) 사후 대응 중심 시스템의 한계

##### 개선 과제 | AI 기반 기술 감지 시스템 도입 및 정부 지원 근거 마련

-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에 AI 기반 위험콘텐츠 자동 감지·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유해 콘텐츠를 사전 탐지·차단해야 함.
- 영상물 피해의 경우 동일·유사 이미지 식별·차단 기술을 적용해 재유포를 방지하고, 폐쇄형 공간에서도 탐지가 가능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기술·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중소규모 플랫폼에는 정부 차원의 기술 지원과 재정 지원을 마련해야 함.

푸른나무재단  
The Blue Tree Foundation

### 3. 주요 피해 사례 및 개선과제

#### 2) 사후 대응 중심 시스템의 한계

##### 현행 제도의 한계

- 현행 법·제도는 신고 접수 이후 삭제·차단 등 조치 위주로 작동하여,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폭력의 사전적 확산 차단 기능이 부족함.
- 피해 발생 후에도 신속 차단이 지연되면서 위험 콘텐츠가 빠르게 재유포되고, 피해가 증폭·장기화됨.
- 폐쇄형 단체 채팅방이나 비공개 계정에서 이루어지는 피해는 현 체계로는 실시간 탐지·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대응 공백이 존재함.
- 신고 의존적 사후 조치 방식은 2차 가해와 반복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냄.
- 플랫폼별 기술 대응 수준에 편차가 크고, AI 기반 탐지 시스템 도입 의무나 통일된 기준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푸른나무재단  
The Blue Tree Foundation

### 3. 주요 피해 사례 및 개선과제

#### 3) 대응이 어려운 해외 플랫폼 피해



“어느날부터인가도르는어른들이술을들고집에찾아와저를 찾는일들이생겼어요 알고보니 SNS에제신상정보와함께외로우니찾아와달라는글이올라와있더라고요. 너무무서워서삭제를요청하고싶은데엄마한테말하기는싫고, 제가직접하고싶은데연락하는방법이너무어려워요. 선생님께서는우리나라회사가아니라서처리가어려울거라고하시더라고요. 저는어떻게해야하나요?”



“우연히아이의스마트폰을보고눈을익심했어요. 아이를사랑하는계정에서신체누위가 노출된사진을계속올리고, 거기에는임에듣기조차힘든수위높은말들이들려요. 플랫폼에신고하기기능으로소재를요청했는데차단이나제재는커녕아무런조치나답변을받지 못했어요. 해외플랫폼이라한번연락을주고받는데만도몇주씩걸려요. 하루하루불안이 커져가네요.”

푸른나무재단  
The Blue Tree Foundation

### 3. 주요 피해 사례 및 개선과제

#### 3) 대응이 어려운 해외 플랫폼 피해

##### 현행 제도의 한계

- 해외 서버 기반 커뮤니티나 플랫폼은 국내 법적·행정적 조치가 즉시 적용되지 않아, 피해 정보 삭제와 차단이 지연됨.
- 국내외 플랫폼 간 삭제 요청 절차와 기준이 상이하고, 국가 간 연계 체계가 미흡해 동일 피해물이라도 삭제 여부와 속도의 차이가 매우 큼.
- 피해자가 여러 플랫폼에 개별적으로 신고·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 구조라, 시간과 심리적 부담이 큼.
- 현행 제도는 국제 공조를 통한 통합 대응 창구가 없어, 대화 내용 및 정보 확인을 위한 기업의 협조가 어려운 현실임.



### 3. 주요 피해 사례 및 개선과제

#### 3) 대응이 어려운 해외 플랫폼 피해

##### 개선 과제 | 사이버폭력 국제 핫라인 구축 및 삭제 연계 체계 마련

- 해외 본사를 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 피해물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신속히 집행 할 수 있도록 협력 의무를 부과해야 함.
- 공공·민간·수사기관이 연계된 국제 협력 기반 사이버폭력 핫라인을 구축하여, 피해 신고·수사 의뢰·삭제 요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피해 구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국가 간 상호협약을 통해 국제 공조 체계를 제도화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협조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4. 맹으며

: 예방부터 회복까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 대응체계



### 4. 맹으며

##### 디지털 환경 속 피해의 복합성과 확산

- 아동·청소년 대상 사이버폭력과 디지털 불법콘텐츠 피해는 성착취물, 모욕·비하 이미지, 신상털기, 장기 노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뻔한 제작·유포와 플랫폼 간 전이를 통해 피해가 증폭·지속됨.
- 피해는 온라인·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학업·관계·정신건강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재유포·재가공으로 장기간 반복됨.

#####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

- 조치 범위가 제한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불법콘텐츠와 신종 사이버폭력에 신속 대응이 어려움.
- 플랫폼별 기술 대응 수준과 규정이 상이해 대응 공백이 발생하고, 해외 플랫폼·폐쇄형 공간에서는 삭제·차단이 지연됨.
- 피해 콘텐츠 삭제·차단 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 감시와 책임성 확보가 미흡함.



#### 4. 맺으며

전 주기 대응체계 전환 : 3대 개선 과제

- 플랫폼 책임 강화 및 조치 실적 보고제 : 사이버폭력 정보(디지털 불법콘텐츠 포함) 신고 시 차단·삭제 조치 의무 마련과 대응 현황의 주기적 보고·공개, 부실 대응 시 제재로 책임성 강화.
- AI 기반 기술 감지 시스템 도입 및 정부 지원 근거 마련 :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AI 기반 위험 콘텐츠 감지·차단 의무화와 중소 플랫폼 정부 지원으로 지능형 기술을 이용한 이용자(아동·청소년) 보호 조치.
- 사이버폭력 국제 핫라인 구축 및 삭제 연계 체계 마련 : 해외 플랫폼과 협력해 삭제·차단 원스톱 시스템 마련과 국가 간 협약을 통한 신속 조치 확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실천

- 예방 - 신속 대응 - 회복 지원의 전 주기 대응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환경 속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아동·청소년이 신속하게 피해를 인정 받고 보호·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사회 전체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책임을 다해야 함.



감사합니다.



## 2 주제발표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유해콘텐츠 유통방지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개선사항

강영은 초록우산 사내변호사

#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유해콘텐츠 유통방지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개선사항

신속한 조치 및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2025. 9. 8.(월) | 강영은(초록우산 사내변호사)



## 목차

### I 들어가며

03

### II 입법개선에 대한 제안

06

### III 마치며

20



## I 들어가며



### I 들어가며

#### ❗ 소셜미디어의 성장과 생성형AI 보편화에 따른 정보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시의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의 부재
- 불법·유해콘텐츠 호스팅·확산 및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큐레이션의 역기능 심화로 사회적 해약 증대
- 정보생태계의 변화에 발맞춰 사회적·개인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체계도 발전할 필요성 제고

#### ❗ 우리나라 통신심의제도의 문제점과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 필요

-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이 공적 규제에 편중 (시정요구, 시정명령) : 유통방지 및 피해 구제의 신속성, 실효성에 의문
- 반면 기업은 대부분 자율규제 영역에 있음  
→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대두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 해외는 온라인 안전 관련 통합법 제정으로써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
- 정보통신망법 : 명예훼손·사생활침해 정보에 한하여 사후적 삭제의무
- 전기통신사업법 : 불법촬영물에 한하여 사전적 유통방지책임

**I**

## 들어가며

초록우산 2024년 온라인세이프티 사업

입법개선 촉구 캠페인 개진 및  
아동권리옹호단의 플랫폼 이용 경험 분석

해외입법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정안 마련 및 제언

“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처한 위험에 대해  
단발적 문제제기나 개정에 머물지 말고,  
해외입법례와 같이 플랫폼기업의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위험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

입법개선 촉구 캠페인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아동권리옹호단 플랫폼이용경험 분석

✓ 이번 발제는 올해의 입법동향을 업데이트하여 구성함

05

**II**

## 입법개선에 대한 제안

### 1. 해외의 입법 동향 및 시사점

초록우산

**II**

## 입법개선에 대한 제안

초록우산

**II**

### 해외의 입법 동향

#### 호주의 Online Safety Act 2021

적용 대상 : 소셜미디어플랫폼, 관련 전자서비스\*, 지정 인터넷서비스 등  
\*최종사용자 간 통신(예: 이메일 전자 메시지 서비스, 채팅 등) 및 온라인 게임

규제 콘텐츠 : 아동 대상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 등  

- 적용 대상 서비스를 매개로 제공되었을 것
- 특정 호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일 것
- 해당 아동을 심각하게 위협·협박하거나,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

사이버폭력 등 유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의무  

- 적용대상 서비스에게 사이버폭력 콘텐츠 등의 신속한 삭제의무 부과
- 규제당국(e-safety Commissioner)이 신고·삭제를 지원

예 사이버불링 콘텐츠 신고 후 48시간 이내 미삭제 → 24시간 이내 삭제명령 → 불이행 시 금전적 제재 등

08

**해외의  
입법 동향**

**미국의 TAKE IT DOWN Act**  
공식 명칭 : Tools to Address Known Exploitation by Immobilizing Technological Deepfakes on Websites and Networks Act.

**적용 대상 : 18세 미만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관련 플랫폼’**

- 이용자가 이미지, 영상, 메시지 등을 공개 게시할 수 있는 콘텐츠를 허용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관련 플랫폼에 해당함
- 단순 ISP서비스, 이메일, 1:1 비공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부수적으로 이용자 생성 콘텐츠제작 서비스는 적용제외

**규제 콘텐츠**

① 동의 없는 사적 이미지(Non-Consensual Intimate Images)    ② AI 생성 성적 이미지

**관련 플랫폼의 삭제의무**

- 피해자나 대리인이 플랫폼에 신고해야 함 (서면 신고서 작성 후 서명, 합의 없이 게시된 내용임을 명시하는 서약서 첨부 등)
- 관련 플랫폼은 신고접수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 삭제 및 사본 제거를 위한 합리적 조치\* 이행해야 함
- \* 동일한 이미지가 제3자에 의해 재게시되었거나 서비스 내 다른 영역에 게시된 경우, 해당 이미지 또한 삭제되어야 함

09

**해외의  
입법 동향**

**영국의 Online Safety Act 2023**

**아동 유해콘텐츠의 유형과 내용**

유형	내용
<b>주요 우선 유해콘텐츠</b> (primary priority content that is harmful to childr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란물(pornographic content)</li> <li>자살, 자해, 성식장이나 성식장에 관련 행동을 장려, 조장하거나 치침을 제공하는 콘텐츠</li> <li>그 자체로 음란물은 아니나, 식별적(identifying) 콘텐츠, GIF, 이모티콘, 기호 등과 결합된 텍스트 콘텐츠</li> </ul>
<b>우선 유해콘텐츠</b> (priority content that is harmful to childr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성정체성 관련 특성에 대한 모욕적 콘텐츠</li> <li>특정한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 장애인, 성정체성을 재정립한 사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li> <li>사람에 대한 심각한 폭력행위를 장려, 조장 또는 치침을 제공하는 콘텐츠</li> <li>사이버괴롭힘 콘텐츠 (위협, 굴욕, 비하 목적의 내용을 포함함)</li> <li>심각한 폭력 또는 상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콘텐츠 (가상의 사람, 동물, 가상의 생명체에 대한 묘사도 포함함)</li> <li>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시도하도록 장려, 조장하거나 치침을 제공하는 콘텐츠</li> <li>신체적 유해 물질 또는 유해할 수 있는 용량의 물질을 섭취, 주입, 흡입하도록 권하는 내용</li> </ul>
<b>비지정 유해콘텐츠</b> (non-designated content that is harmful to childr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 아동의 상당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li> </ul>

11

**해외의  
입법 동향**

**영국의 Online Safety Act 2023**

**적용 대상 : 이용자 간 서비스\* 및 검색 서비스 등**

\*이용자가 콘텐츠를 생성·제시·공유하여 다른 이용자가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소셜미디어, 온라인게임, 메시징 앱, 클라우드서버 등)

**규제 콘텐츠**

<b>불법콘텐츠</b> 특정 범죄 관련 콘텐츠	<b>유해콘텐츠</b> 적법하지만 유해한 콘텐츠
테러 조장, 아동 성착취·성학대, 자살 조력, 마약·총기 거래 등	아동 유해콘텐츠와 성인 유해콘텐츠와 구분됨 콘텐츠 내용의 심각성에 따른 유형 세분화 및 규제 차등

10

**해외의  
입법 동향**

**적용대상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광범위한 주의의무 부과**

<b>1 안전의무</b> 불법유해콘텐츠 발견 시 신속한 삭제·차단 등 노출 예방 조치	<b>2 위험평가의무</b> 서비스 설계·운영상 위험 수준 및 위험도 완화·관리조치 자체 평가 → 규제기관(OFCOM) 평가 및 공개
<b>3 이용자 신고 절차 제공의무</b>	<b>4</b> (아동의 이용가능성이 있다면) 아동 이용자 안전의무, 아동위험평가의무를 추가 부담

※ 주의 의무는 서비스 유형 및 영향력, 아동 이용가능성 등에 따라 세분화되고 비례적으로 적용됨

12

## 해외의 입법 동향

13

### 해외입법례의 시사점

#### ① 규제 콘텐츠의 범위를 폭넓게 설정(illegal + legal but harmful)

→ 기업이 이에 대한 유통방지책임을 부담



#### ② 불법·유해콘텐츠 관련 이용자 신고 시 신속한 조치(삭제·차단 등) 강조



#### ③ 불법·유해콘텐츠 수준을 분류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차등화



##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방향

15

### 개요

#### 플랫폼의 삭제의무 강화

피해자 친화적이고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재기능

투명보고사항의  
확대

####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

#### 법 위반시 제재 강화

## 입법개선에 대한 제안

### 2.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방향



##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방향

16

### 플랫폼의 삭제의무 강화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 법 위반시 제재 강화

#### 입법개선의 필요성

- GAI로 즉시·대량 생산한 환각, 딥페이크 합성물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정보 확산 구조가 결합할 경우, 피해자는 대응 기회를 거의 상실

#### 삭제 대상 정보 및 신고자 범위의 확대

-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는 너무 협소함
  - 해외입법동향을 참고하여 위 정보 외의 불법·유해콘텐츠도 삭제 대상 정보에 포함
- 저작권 침해 콘텐츠와 달리, 불법·유해콘텐츠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자가 불명확한 경우 많음 (신고·삭제의 비효율성↑)
  -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의견 완화
  - (예) EU의 DSA처럼 ‘결격사유가 없고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규제기관이 재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의

#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방향

## 플랫폼의 삭제의무 강화

- 정보통신망법상 기한 “지체 없이”(법 제44조의2제2항): 의미가 모호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기한 “14일+14일”(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5조제3항)  
: 불법촬영물에 따른 피해 수준에 비해 너무 장기임

## 삭제 등 조치기한의 보완

- 일정한 기한 명시 또는 단축 등 입법적 보완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
  - 월간활성이용자수·매출규모 등에 따라 조치기한 차등화  
(\*소형 플랫폼 96시간/대형 플랫폼 240시간과 같이 구체적 명시)
  - 단, 불법성이 명백하고 피해가 임박한 불법콘텐츠는 “즉시” 조치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기한 단축 필요)



#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방향

초록우산

## 법 위반시 제재 강화

플랫폼의 삭제의무 강화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

✓ 호주, 영국 등은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가함

가령 영국은 1,800만 파운드 또는 전세계 수익 10% 중 큰 금액을 적용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근본적 수익구조 제재까지도 단행  
(예: 美 FTC의 알고리즘 삭제 명령)

✓ 국내법도 불법·유해콘텐츠 관련 의무 위반에 제재 강화 필요

특히 위험평가결과 조작 및 허위투명성보고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검토 필요

삭제의무 위반행위가 장기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보다 강력한 제재 필요

The screenshot shows a green header bar with three small icons. The main content area has a white background. At the top right is a logo for '초록우산' (Green Umbrella) with a green leaf icon. Below it are two sections: '플랫폼의 삭제의무 강화' (Platform Deletion Obligation Strengthening) and '법 위반시 제재 강화' (Enhanced Punishments for Legal Violations). A large grey callout box is centered, containing a green checkmark icon and the text '위험평가제의 도입' (Introduction of Risk Assessment System). It lists several bullet points about risk assessment requirements for various platforms. At the bottom of this box is a note: '<참고> 영국 OSA2023의 아동위험평가사항' (Reference: UK OSA2023 Child Risk Assessment Items), followed by a numbered list of items I through IV.

초록우산

플랫폼의 삭제의무 강화

법 위반시 제재 강화

✓ 위험평가제의 도입

- 플랫폼 서비스의 구조적 위험성 평가 강제와 공적 검증을 의미
- 정보통신망법에는 불법촬영을 관련 투명성평가결과 제출의무만 부여하고 위험평가 및 검증관련 규정 부재  
→ ① 사업자의 불법촬영을 유통방지계획 및 현황의 타당성 검증 미흡  
→ ② 이용자가 서비스의 포괄적인 위험성을 알고 선택할 권리 보장 미흡
- 아동이 이용하는 플랫폼에게는 아동 관련 별도의 위험평가의무\* 추가

<참고> 영국 OSA2023의 아동위험평가사항

- I. 만성대별 아동이용자 수,
- II. 아동유해콘텐츠 노출 위험도 분석결과(서비스 내 알고리즘이 얼마나 쉽게,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해당 콘텐츠를 전파할 수 있는지 포함)
- III. 서비스의 설계구조와 기능이 아동이 콘텐츠 노출로 입는 피해에 기여하는 정도 (성인이나 다른 이용자를 걸색, 연락할 수 있는지 여부 포함)
- IV. 식별된 위험의 종합에 서비스의 설계구조와 운영수익모델, 지배구조, 예방기술, 이용자의 미디어 리터라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한 조치 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마치며

21

초록우산

● 소셜미디어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재설계**가 중요

- 불법·유해콘텐츠에 대한 ① 사후 조치 → 사전 예방 / ② 공적 규제 → 민간 규제
- 다만, 표현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 내지 아동에 대한 과도한 배제가 되지 않도록 섬세한 입법과 집행 필요

● “온라인 안전”에 대한 포괄적 접근 필요

- 현행법체계상 단일법을 통한 해결 불가 → 정보통신망법의 일반법적 지위 강화와 함께 관련법률의 포괄적 개선 필요

주제	관련법률
기업의 책임 강화 및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분절적 규제체계의 통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청소년 보호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자능정보화 기본법
기타	(성인→아동간, 아동→아동간 디지털격차 관련) 디지털포용법 (소위 세어런팅 관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종합토론

## 좌장

**박종효**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교수)

## 토론

**김은혜**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팀장)

**안나현**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

**양기정** (경기 승지초등학교 교사)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

**노현서**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과장)

# 1 토 론

김 은 혜

---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팀장

#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대안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미디어보호팀 팀장 김은혜

디지털 환경 내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고 귀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안전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 1.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는

저희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스스로넷’은 지난 2000년, 푸른나무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미디어교육/미디어문화/미디어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는 서울시 최초 청소년 미디어 특화시설입니다.

‘청소년이 미디어로 건강하게 세상과 소통하고 스스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즐거움을 일깨운다’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미디어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설치된 미디어보호팀에서는 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미디어 사용 문화를 확산하고자 청소년과 미디어 역기능 관련 연구, 교육,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폭력, 디지털범죄 예방과 관련해서는 학교폭력이 사이버화된 사이버폭력의 비율이 증가하였던 2016년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언어)폭력 예방교육을 개발하고 보급해 왔습니다. 또한 딥페이크와 디지털 그루밍의 피해 학생이 발생한 학교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개발하여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 2. 학교 현장의 아동·청소년의 목소리

저희가 예방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찾아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그냥 장난이었어요.”, “그게 사이버폭력인지 몰랐어요.”, “난 재미로 찍어서 공유한 사진인데, 친구가 기분 나빠할 줄은 몰랐어요.”,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등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한 표현은 ‘몰랐다’입니다.

사이버폭력이 무엇인지, 디지털 불법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이 범죄인지, 사이버폭력의 법적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피해자/놀림을 당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심지어는 내가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합니다.

불법인 줄 알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아동·청소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만난 대다수의 학생들은 악의적 의도보다는 무지와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가해와 방관이 많았습니다.

## 3.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 및 예방하고자, 아동·청소년의 인지-정서-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예방교육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구 분	목 적	구성 내용
인 지	사이버폭력/ 디지털성범죄 이해하기	[사이버폭력/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 정의/종류/관련 법률 및 처벌사항 *사이버폭력예방교육: 사이버폭력 지킴이 테스트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디지털환경 안전 점검표
정 서	마음의 중요성 이해하기 피해자의 마음 공감하기	[사이버폭력/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 피해사례를 통한 피해자의 마음 인식
행 동	사이버폭력/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대처방법 이해하고 실천하기	[사이버폭력/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 위험 sign 인식 – (방관자/피해자 중심) 예방법 및 대처법의 이해 –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예방교육을 통해 사이버폭력 및 디지털 관련 범죄가 무엇이며, 피해자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또한 내가 한 가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사이버폭력과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4.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입니다. 이제, 미디어 역기능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개입했던 예방교육과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적 접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순한 지식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발달 단계를 고려한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초등: 인간의 존엄, 언어와 행동의 영향력, 사이버폭력의 이해 등
- 중·고등: 온라인 책임과 법적 규제, 디지털 시민윤리 등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같은 전문기관들이 학교와 협력하여 디지털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을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받은 후 실제 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디어 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활동과 플랫폼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들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사,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정 내에서, 또는 학교에서 건전한 디지털 습관과 시민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돋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과 교사 연수를 통해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미디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책임 강화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미디어 기업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유해 콘텐츠를 방지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미디어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적 노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책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와 같은 전문적인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발전시키고,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공동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교육기관, 미디어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디지털 시민성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책임감 있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 5. 마무리

아동·청소년을 현장에서 만나는 상담사로서 “몰라서 저지르는 사이버폭력과 디지털 범죄”에 아동·청소년이 노출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디지털 범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회복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알고 - 느끼고 - 행동’하는 교육을 통해 건강한 인성을 가진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과 회복이 함께 가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들어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토론

## 안나현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

## 토론문

부산광역시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 법학박사 **안나현**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통과 정책의 장을 마련해 주신 초록우산과 푸른나무재단 관계자분들과 발제문을 준비하신 강영은 변호사님과 김미정 상담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제문의 주제인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유해콘텐츠 유통방지책임강화와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개선과제”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2025년 8월 14일) 김용민·모경종 의원실, 범창작협의체,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협의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sup>1)</sup> 이 세미나의 주제 역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와 경찰 및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막중하며 불법콘텐츠 유통 조직은 점차 지능화, 고도화가 되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불법콘텐츠 유통은 웹툰, 영화 등 저작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영상물의 경우 논의의 외연을 깊게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불법콘텐츠에 대한 국제 공조 문제나 입법 개선 및 대응 과제는 피해 발생에 앞선 선제적이 아닌 사후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부분과 형사사법절차라는 단 한 번의 절차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는 해외 불응 사이트에 접속해 각 사이트 운영자 또는 서버 호스팅 업체 지원창구를 통해 지속적인 삭제요청을 수행하고 있으나 응답이 돌아오지 않거나 사이트를 폭파하는 방식으로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국제적 형사공조가 없는 한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며 해당 사업자들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할 기관과 법적 근거가 부재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초록우산 강영은 변호사님의 발제문에서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처한 위험에 대해 단발적 문제 제기나 개정에 머물지 말고, 해외 입법례와 같이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위험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해외 입법례의 규제 콘텐츠의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여 기업이 이에 대한 유통방지책임을 부담하게 해야 하며 이용자 신고 시 신속한 조치를 강조하셨으며 영국의 Online Safety Act와 같이 유해 콘텐츠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안도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법만으로 파도를 멈출 수는 없다’는 조금은 힘이 빠지는 말씀을 드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에서 수많은 법률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지만 아무리 형사적 제제와 대응 방안을 촘촘하게 규정해도 범죄가 완벽하게 예방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sup>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 제도라는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과 지원책을 찾아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1) 자세한 내용으로 콘텐츠 불법유통대응 경찰청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 자료 참조. <https://drive.google.com/open?id=1KtCMqkte0mJzBQix9iCzQk1cdPVXCEgN>

2) 즉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미국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를 살아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는 수도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들이 과연 범죄 억제의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형벌인 사형조차 범죄를 예방하지는 못하는 수많은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기관은 피해촬영물에 대한 차단을 요청합니다. 다음의 방침위 신고 관련 사항의 현실을 살펴보시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현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불법유해정보 신고채널을 통해 내담자 피해촬영물의 URL을 차단 요청하면, ‘방심위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이 24시간 내 국내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차단여부에 대한 ‘심의’의 과정일 뿐, 인터넷사업자에게 차단을 요구하고 실제적인 접속차단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부산디스센터에서 금년 5월 약 60여건의 URL차단을 방심위에 요구하였으나 1개월 내 국내접속차단이 이루어진 것은 단 2건 뿐이었습니다. 방심위는 차단에 대한 심의는 신속했으나 국내 인터넷통신망 사업자가 피해촬영물을 실제로 차단하도록 강제력을 부여할 법적 권한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방심위에 피해촬영물의 유포차단을 요구하려면 피해자의 실명과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 시일이 더 소요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심위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 차단을 요청하여 국내통신망 사업자가 접속을 차단한다 하더라도 해외접속 우회망(VPN)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내접속 차단은 피해촬영물 유포차단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피해촬영물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기관들이 해외 유포사이트의 ‘고객센터(abuse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피해촬영물을 지워달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abuse센터에 연락할 방법을 알아내는 것부터 만만치 않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연락이 닿는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그들의 선의에 기대어 유포물 삭제를 빌어야 합니다. 반응하는 사이트보다 반응하지 않는 사이트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유포피해물의 상당수는 해외 성인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들은 피해촬영물을 구매하거나 ‘제보/기여’받아서 영상물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광고수익을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사이트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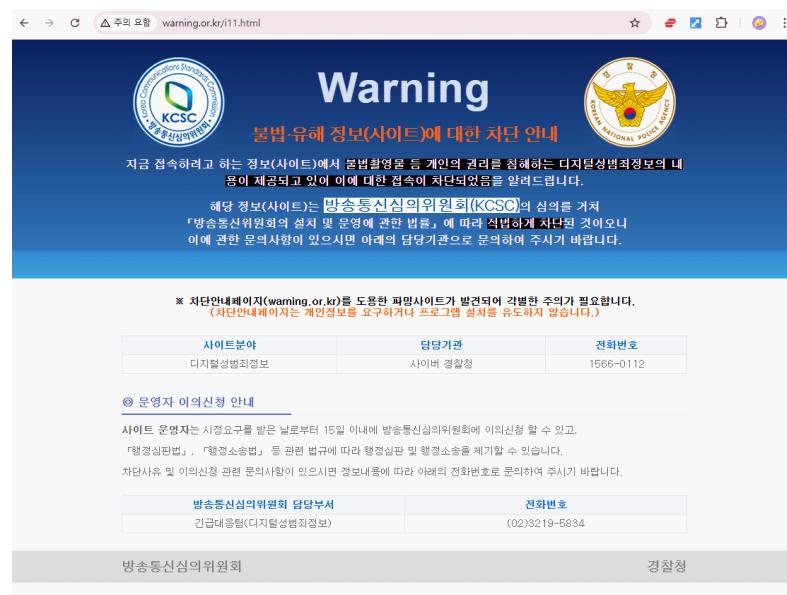
또한 이러한 해외성인사이트는 여러 접속 경로와 사이트명을 갖추고 있어, 하나의 사이트가 법적제재나 통신망 사업자의 abuse차단으로 인해 차단당하더라도 거의 유사한 복제 사이트를 ‘대피소’로서 살려놓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피해촬영물의 URL을 하나하나 삭제하는 것은 유포확산에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영상 하나를 지우더라도 무수한 ‘대피소’들에 같은 영상은 계속 돌아다니고 유포물 판매자, 사이트운영자, 광고주와 대행사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피해촬영물 유포확산·차단을 이야기할 때 늘 따라다니는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인터넷플랫폼 기업들은 이 표현의 ‘자유’에 기대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그들의 넷망에 의해 파괴 되어가는 수많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고통은 외면합니다. 법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국가나 사회적 움직임에

막대한 법률 방어를 행사하며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법의 속지주의적 안전망을 쉽사리 뛰어넘습니다. 국제연대와 국제법의 마련이 시급한 이유 중 하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체 어느 나라 국가와 법의 통제를 받고 있는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각종 플랫폼들이 불법촬영물을 자체적으로 삭제하거나 유포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아동·청소년 피해물의 경우 그들의 ‘고객’들의 신고를 통해 삭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대응의 속도는 유포물 확산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인 피해자의 피해물에는 더 반응이 느립니다.

### 〈 방심위 접속차단 안내 화면 〉



푸른나무재단 김미정 상담본부장님의 발제문에서 디지털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내에서의 성적 착취의 문제는 디지털매체가 생겨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점과 해결책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 피해자 지원의 현황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저연령화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78.7%가 10대와 20대입니다.<sup>3)</sup> 실태조사 기반의 피해양상과 현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에 첨언을 드리면 디지털 매개물 기반의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의 경우도 명백하게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범죄인식의 전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는 그 위험성이 큰 반면 행위자(가해자)의 반성도가 낮은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디지털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마찬가지로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형사정책적 관점의 범죄억제이론 하나만으로 관철시켜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sup>4)</sup>, 처벌이 범죄예방에 주는 효과는 유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에는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는 행위도 장난이 아닌,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3) 202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보고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5, 15면, 202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보고서, 이젠센터, 2024, 15면.

4) 범죄억제모델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수단으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처벌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록 범죄율은 줄어든다는 이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종대, 형사정책, 흥문사, 2011, 315면 참조.

### (2) 대안

#### 1) 국가공조 : 국가 간의 협력 및 규범적 형성에 적극적 참여

기업은 언제든지 정책을 변경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 업체는 국가마다 속지주의에 따라 자국의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이 없이는 해외에서의 불법 컨텐츠 유통의 예방은 규제하기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합니다. 국제적 공조의 문제는 국가 간의 협력 및 규범적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현재 국제법과 국내법 차원에서 “명확한 공조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유럽 사이버범죄협약(부다페스트 협약)의 경우 한국은 2022년에 협약가입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2023년 정식 가입 초청서를 받았습니다. 이 협약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사이버 범죄의 대상을 규정하고 협력절차를 규정하게 됩니다.

해외 불법콘텐츠를 유통하는 사이트들의 합법과 위법부터 분류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축된 사이트 내에서 불법유통물을 유통하는 분류와 처음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컨텐츠들의 위법성의 정도에 따른 분류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여 움직이면서 국제공조를 위한 통합대응기구를 마련하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2) 입법 : 입법의 개정으로 제도의 장치 마련

발제해 주신 것처럼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 공적 규제가 아닌 민간 규제를 중심으로 온라인 안전에 대한 관련법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관련법률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법률이 단일한 체계를 갖추기에 미흡한 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상위 개념의 호주와 같은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신설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선제적 대응이 어렵고 사후적인 삭제와 차단요청에 임시적 조치로 이루어지므로 플랫폼의 태도가 미온적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재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3) 형사절차 : 온라인 압수·수색제도 및 전담중심기구 마련

전통적인 형사절차방식 압수·수색의 대상은 압수물 또는 증거물입니다. 이와 같은 수사방식은 디지털성범죄에 있어 접근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온라인 수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컴퓨터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에 백도어를 설치하여 비밀리에 접근하는 수사 방법입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텐츠의 불법유통을 대응하기 위한 전담중심기구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담중심기구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불법유통에 대해 피해자의 창구가 되고 검찰, 경찰에 대응하여 수사, 수사협조, 협력을 촉구할 수 있는 중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발제자분이 제시하셨듯이 삭제를 요구할 권리자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와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의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플랫폼의 삭제의무가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운영자의 범죄수익금의 몰수를 통한 피해자지원금으로 환수하는 근거조항 마련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 (3) 나가며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는 대응하기 어려울 만큼 어렵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정책을 제시하고 입법을 하는 등의 절차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대응책은 앞으로의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피해영상물이 확인되면 형사사법적으로 처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실행 주체로서 사이트 운영자(즉 범죄의 주체)를 식별하고 그가 한국인이거나 범죄지가 한국일 때 수사를 해서 그 사람을 기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형사사법의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범죄의 억제 및 차단이라는 관점에서 전담 창구의 역할을 하는 중심 기구 또는 TF 조직이 그 사이트, 즉 플랫폼 운영자, 또는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서버 자체를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료 서비스라면 국제공조를 통해 수익을 모으는 결제 계좌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결제 서비스 자체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이트 자체의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면 범죄피해영상물을 이용하여 이윤을 얻거나 성착취를 위한 사이트에 대한 불법성의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수사 절차의 적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법의 해석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유포·삭제 불응 사이트와 플랫폼 대응을 위하여 중앙디성, 지역디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삭제요청에 불응하며 유포 속도가 빠른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연계삭제 요청하는 등의 디지털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활동들은 향후로도 이어 나가야 할 과제이자 숙제일 것입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입법개선의 문제와 아동·청소년의 대응체계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의 기회를 주신 발제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3 토론

### 양기정

경기 승지초등학교 교사

##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중심으로

경기 승지초등학교 교사 양기정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환경 속 아동 권리를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경계를 세우고, 피드백을 고민하는 교사 양기정입니다. 불법콘텐츠에 대한 경계 세우기와 아이들을 위한 적정 피드백에 관하여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에 관해 짚고자 합니다. 경계 세우기란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의 우리 어른들은 생각보다 아이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저마다 사랑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사랑의 실천이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경계를 명확히 하며 믿어주고, 친절하며, 존중과 애정 표현을 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아이가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친절하며, 아이의 느낌이나 생각을 용기 내어 말하면 존중하고 기뻐하며 애정 표현을 하는 모습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어른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존경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계를 세우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어른은 아시다시피 정말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이들은 이러한 어른들의 경계를 꾸준히 시험합니다. 경계를 시험한다는 것은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경계를 묻고, 듣는 과정은 배움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경계를 두드려봅니다. 규칙상 교실의 태블릿은 태블릿 보관함에 통합하여 보관합니다. 그러다 한 아이가 수업 시간에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며 필기를 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그러다 쉬는 시간에 종종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락을 받지 않고 이상형 월드컵을 합니다. 선정적인 광고와 글들이 노출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주의를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큰 것을 시험합니다. 쉬는 시간에 태블릿으로 음악 감상을 해도 되는지, 집에서 이어폰을 가져와서 점심시간에 들어도 되는지 묻습니다.

아이들이 크로마키로 동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과제를 하다 보면 친구의 사진을 찍어 편집하여 움직이는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를 영상에 담곤 합니다. 그걸 보고 누군가는 친구에게 장난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된다고 분명히 말하면 ‘왜 저는 하면 안 되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등의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계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아이들의 자유는 점차 무분별하게 뻗어나가고 부딪힙니다. 마치 규제해야 할 콘텐츠들처럼 곳곳에서 갈등의 싹을 틔웁니다. 모욕, 대상화, 은밀한 성적인 대화 등을 보며 교사도 아이도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드백에 관해 짚고자 합니다. 플랫폼과 교사의 책임 있는 행동은 바로 피드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드백의 중심은 ①‘누가 힘들어하는가?’ ②‘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비난받아야 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와 같은 책임을 떠넘기는 질문에 지쳤고,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 옆에 앉아 나를 바라봐주고, 내 이야기를 경청해줄 때, 나의 힘듦을, 크기를 판단하지 않을 때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함께 바라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고려하여 질문해준다면 신뢰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했을 때 “이 게시물은 언어폭력, 명예훼손, 따돌림, 스토킹, 사칭, 갈취,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은 위의 어려움 중에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크게 느껴지나요?”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글을 게시할 때 게시물을 분석하여 “이 게시물은 언어폭력, 명예훼손, 따돌림, 스토킹, 사칭, 갈취,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위험이 예상되나요?”라는 질문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기반 플랫폼 이용 설계는 이용자가 자기가 겪는 어려움을 체크하며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효능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게시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려움을 고민하고 책임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사후 대응 중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플랫폼은 게시하거나 신고를 접수하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의무화하는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용자는 안전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싶으며, 방법을 배우고 기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입법을 통해 피드백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다면 이용자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문화를 위해 신고와 제안 모두 노력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푸른나무재단이 제안한 ‘조치 실적 보고제’ 제안은 플랫폼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실천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가 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입법은 사이버폭력의 실태에 공감하여 플랫폼에 명확한 경계를 세우고 피드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플랫폼은 이러한 부름을 받아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아동에게 제공하는 자발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언을 마칩니다.

# 4 토론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토론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전윤정

### 1. 디지털 성범죄 법·제도 현황

#### 1) 국회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사항

##### 가. 제21대 국회 법률 개정 사항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제21대 국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주요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개정되었다.

[표 1] 2020년 'n번방' 이후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현황

관련법	주요 개정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11조 개정)</li><li>-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소지·운반·광고 등 처벌 5년이상 유기징역 (제11조 개정)</li><li>-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등을 도모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제7조의2 개정)</li><li>-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한 자 처벌 1년 이상 유기징역 (제11조제5항 신설)</li><li>-상습적으로 아동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제11조제7항 신설)</li><li>-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처벌과 위장수사 (제15조의 2 및 제25조의2 신설)</li><li>-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 변경</li></ul>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최대 2천만 원 벌금</li><li>-카메라 등 촬영·복제 및 반포 등/최대 7년, 5천만 원 벌금</li><li>-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상습범죄시 가중처벌 (제14조제4항 및 제5항)</li><li>-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시 처벌 (제14조의3)</li><li>-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처벌(제14조제1항내지 제3항)</li><li>-허위영상물(딥페이크),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등 제작, 유포 등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신설(제14조의2)</li><li>-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제15조의 2)</li></ul>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등에 대해 삭제 지원(제7조의2개정)</li><li>-삭제지원 요청자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직계친족, 형제자매, 대리인 포함(제7조의2제2항신설)</li><li>-불법촬영물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 행위자(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제7조의2제5항 내지 6항 개정)</li></ul>

「전기통신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부가통신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삭제·접속차단등 유통방지 조치의무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 (제22조의5제1항 및 제2항)</li><li>-불법촬영물의 등의 삭제·접속차단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제22조의6)</li></ul>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통정보 중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제4조제2항제7호의2)</li><li>-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을 적용하도록 함(제5조의2)</li><li>-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지정(제44조의9 및 제76조제2항제4호의4)</li><li>-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처리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64조의5 및 제76조제3항제25호)</li></ul>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하여 정리함, 2025.6.9. 확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시청죄, 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 대화(그루밍죄)죄, 위장수사조항이 신설되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주요 법률 법정형이 상향되고 처벌이 강화되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허위영상물 유포죄가 신설되면서 「성폭력방지법」상 삭제지원 대상에 포함되었고, 삭제요청자 대상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다.

#### 나. 제22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사항

제22대 국회에서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화되자 2024년 9월26일 본회의를 거쳐 허위영상물 제작, 반포 등을 규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 수사'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경찰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자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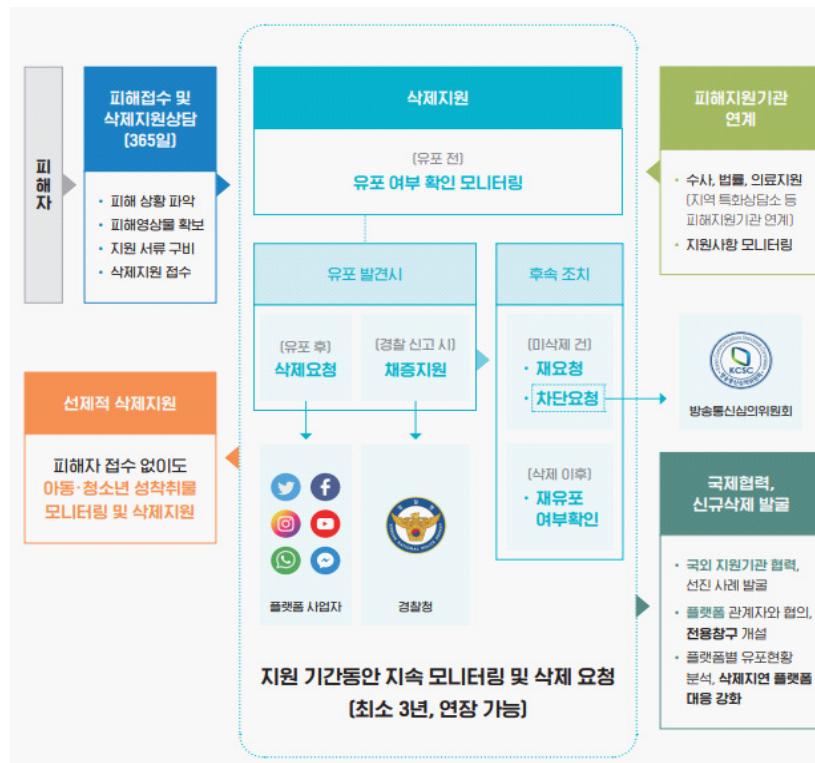
「성폭력방지법」에서는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삭제 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명시, 둘째, 중앙 및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셋째,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등을 신설하였다.

####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현황

한편, 여성가족부에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설치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과 동 법 시행규칙 제2조의6에 근거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

디성센터는 인터넷, SNS공간에 확산되어 있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을 삭제하고 유포를 방지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디성센터의 업무 체계는 피해자상담접수→ 피해자 삭제요청에 따라 피해촬영물 URL확보→ 긴급삭제지원(플랫폼 사이트 삭제요청, 방심위 차단요청, 채증자료작성 경찰청 제보)→ 집중삭제(집중삭제 사례 선정하여 특화 삭제전략 개발·시행)→재유포 모니터링을 시행하며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등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삭제지원체계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2024.

디성센터는 2018년 처음 설립되었고 기술과 인력의 확보, 삭제지원체계확립, 관련기관과의 협력 등의 체계화 등을 거쳐 작년까지 93만8천여건의 불법촬영물을 삭제지원 하였다. 관련 현황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하지만 전체 불법촬영물의 미삭제율이 29%(평균) 내외로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불법촬영물이 미삭제 되는 이유는 정보통신망 사업자가 국외사업자인 경우, 포털이나 플랫폼 등의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밝혀지고 있다.

[표 2]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현황

(단위: 건, %)

연도	삭제요청 건수	삭제완료(건)	미삭제(건)	미삭제율(%)
2020	156,136	97,164	58,972	37.3
2021	166,905	124,648	42,257	25.3
2022	206,908	156,455	50,453	24.4
2023	243,607	167,685	75,922	31.2
2024.6	165,095	122,782	42,313	25.6
계	938,651	668,734	269,917	29

※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 관리」, 2024.9.12.

불법촬영물등 피해 유형 현황을 살펴보면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합성·편집물 자체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유포, 유포·협박등과 중복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표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

(단위: 건(중복))

기간	합계	불법촬영	합성·편집	유포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이버 괴롭힘	기타
2020년	6,983	2,239	349	1,586	967	1,050	306	486
2021년	10,353	2,228	176	2,103	1,939	2,660	533	714
2022년	12,727	2,684	212	2,481	2,284	3,836	534	696
2023년	14,565	2,927	423	2,717	2,664	4,566	500	768
2024년 (6.30.)	11,838	3,306	726	2,155	1,725	3,009	193	724

주: 한 피해자가 경험한 피해 유형은 복수일 수 있으므로, 피해 유형은 중복으로 집계

자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출자료, 「불법촬영물등 관리 현황」, 2024.9.12.

유포 통신망(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을 보면, 유포 통신망을 살펴보면, 성인사이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순이다. 과거 불법촬영물 주요 유통경로였던 웹하드, P2P 등은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표 4]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통신망 현황

(단위: 건)

기간	합계	성인사이트	P2P	소셜미디어	웹하드	검색엔진	기타 (커뮤니티 등)
2020	158,760	38,332	5,152	65,894	45	25,383	23,954
2021	169,820	59,113	5,181	31,980	344	30,372	42,830
2022	213,602	95,485	4,158	31,053	0	37,025	45,881
2023	245,416	114,672	291	35,599	0	73,245	21,609
2024년 (6.30.)	165,365	65,994	138	6,957	0	81,639	10,637

자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출자료, 「불법촬영물등 관리 현황」, 2024.9.

## 2.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제도 개선 방향

### 1) 긴급삭제·차단 제도 도입

현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모니터링과 신고, 삭제지원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가해자추적 및 검거, 수사는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삭제·차단 권한이 있고 실제로 삭제주체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있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 디지털성범죄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영상물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48시간 긴급삭제명령 제도', '응급조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sup>1)</sup>

지난 2021년 10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1) 수사기관이 해당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삭제·차단 요청, 2) 플랫폼 등에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경고 등의 응급조치 규정 마련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한 바 있는데<sup>2)</sup> 관련부처 의견 등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 이러한 업무를 부과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권한이 있는 방침위 등에서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대응전담부서를 통해 심의→삭제·차단 명령→삭제완료→모니터링에 이르는 과정을 24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2) 디지털성범죄 전담기구 마련과 삭제·차단조치 일원화

장기적으로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있어 경찰, 여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부, 기업,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협업하는 상시적인 감시·신고·삭제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정부조직, 행정, 권한, 법률전문가 등 각 부처에서의 통합적이고 일관된 체계 마련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호주, 미국, 캐나다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피해자 보호 대책은 신고, 수사, 행정, 기업, 교육 등이 연계되어 있고, 이러한 시스템은 국가가 중심으로 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장점은 피해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처리가 가능한 점, 기업 또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강제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 경찰·기술전문가·아동학대전문가, 교육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이며 일관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호주는 여성, 아동·청소년 인터넷 성착취에 대한 피해 대책 기관으로서 인터넷 안전국(Office of eSafety Commissioner)을 호주 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산하의 독립된 법정기관으로 두고 온라인 안전에 관하여 국가 차원의 피해차단·보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3)</sup>

이 기관은 의회 법에 따라 설립된 연방정부 법정 기관이며 「온라인안전강화법」(Enhancing Online Safety Act 2015)에 의해 2015년 설립되었다.

### 3)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비율 제고 및 국제 협력 강화 방안

디성센터 피해 영상물의 3분의1가량(평균 29%)이 삭제되지 않아 미삭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미삭제 이유를 살펴보면 서버가 해외에 있어 영상물을 삭제할 수 없거나, 정보통신사업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없기 때문이다.<sup>4)</sup>

또한, 디성센터의 국제협력을 통한 삭제 현황은 2023년 165건, 2024년 4,390건에 불과한데 현재 유일하게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 업무협약을 통해 삭제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주체가 공식적으로 삭제, 가해자 정보와 증거자료 요청 등의 내용을 요구하고 실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기관의 실질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삭제지원과 유포방지 대책이다. 이를 위해 디성센터의 확대, 역할과 기능 강화, 전문인력 증원, 예산증액, 국제협력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이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1개소 증설(14개소→15개소), 삭제 실무자 1인당 지원대상 확대(현재 1인당 1만여건 삭제지원), 딥페이크 탐지·삭제지원 시스템 자동·고도화, 디성센터 피해상담 안내·신속지원 등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으로 보기 힘들다.

### 5) 국가기관, 포털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포털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업체와의 협력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지난 텔레그램 'n번방' 대책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지난 2020년 5월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업자도 성범죄물 유통방지의 책무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물의 발견과 사후적 조치, 유통규제에 있어 민간서비스업체, 포털사업자 등의 자율규제와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관련 민간업체와의 협약, 정보공유 등을 통해 삭제·차단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1) Human Rights Watch,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한국의 디지털성범죄」, 2021.6.16.

2) 법무부 보도자료, 「신속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차단을 위한 ‘응급조치’ 신설 권고」, 2021.10.28.

3) 전윤정,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대책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논점」, 국회입법조사처, 1690호, 2020.

4) 박성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24.9.3.

# 5 토 론

김우석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

## 토론문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

## 6 토론

노현서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과장

## 토론문

노현서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과장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중심으로